

외국인근로자 제도 건의 결과!!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조합은 골판지포장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의 도입쿼터 확대,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결과 “2011 외국인 고용한도 20%상향 업종”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12.21(화)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건의 한바,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회신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그건 이렇습니다”를 통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실업난 속에서도 내국인의 중소기업 취업기피로 생산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그나마 외국인력 도입으로 생산 활동을 지탱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도입 쿼터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제조업 연간 외국인력 도입쿼터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제조업	42,100	60,800	13,00	28,100*

* 당초 19,500명이었으나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하반기 1만명(제조업 8,600명) 추가도입 결정

- 금년의 예를 보더라도 2010년 상반기 13,500명이 1개월 만에, 3/4분기 3,000명은 이를 만에 소진되었으며, 하반기에 도입쿼터를 늘려 8,600명 추가 도입하였으나 인력난 해소에는 역부족임
- 이렇듯 외국인력 채용 경쟁의 심화로 인해 생산 현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건의사항

- 2011년 외국인력 도입쿼터 결정시, 중소제조업이 연간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금융위기 이전인 '08년도 수준 이상으로 도입,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지원 필요

A 201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현황

▶ 건의내용

- 2011년 외국인력 도입쿼터 결정시, 중소기업이 연간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금융위기 이전인 '08년도 수준 이상으로 도입,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지원

▶ 검토의견: 부분 수용

-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경기상황, 기업의 인력부족률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며
- 내년도 도입규모는 '10.12.24 개최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므로, 현재 구체적 도입규모가 결정되지 않았음
-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참고〉

외국인력 도입규모 현황

- 연도별 외국인력 쿼터

2007년 도입쿼터				2008년 도입쿼터			
구분	계	일반(E-9)	동포(H-2)	구분	계	일반(E-9)	동포(H-2)
계	109,600	49,600	60,000	계	132,000	72,000	60,000
제조업	69,300	42,100	27,200	제조업	76,800	60,800	16,000
건설업	14,900	4,400	10,500	건설업	18,000	6,000	12,000
서비스업	20,600	200	20,400	서비스업	31,000	400	30,600
농축산업	3,600	1,900	1,700	농축산업	5,000	4,000	1,000
어업	1,200	1,000	200	어업	1,200	800	400

그건 이렇습니다

2009년 도입쿼터				2010년 도입쿼터			
구분	계	일반(E-9)	동포(H-2)	구분	계	일반(E-9)	동포(H-2)
계	34,000	17,000	17,000	계	34,000	34,000	0
제조업	23,000	13,000	10,000	제조업	28,100	28,100	체류인원 (입국자 - 출국자 등) 현행유지
건설업	2,000	2,000	0	건설업	1,600	1,600	
서비스업	6,000	100	5,900	서비스업	100	100	
농축산업	2,000	1,000	1,000	농축산업	3,100	3,100	
어업	1,000	900	100	어업	1,100	1,100	

Q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수당이며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식대·교통비 등은 제외됨
 -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외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중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
 - * 「각국의 외국인력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연구」(노동연구원, 2008.8월)
 - 대만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에 숙식비용이 포함됨
 - 우리나라 1인당 GDP의 약 2배에 달하는 UAE(두바이)의 경우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이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의 1/5 수준에 불과
- 한편, 최초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내근로자에 비해 언어, 문화, 근로경험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됨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서 청년인력의 인턴기간을 6개월로 하는 예에 비추어, 이들 청년인력에 비해서도 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은 이보다 긴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숙식비 포함
-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수습기간 연장 근거 마련(현행 3개월 → 12개월)

A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제

▶ 건의내용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 포함
-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수습기간 연장 근거 마련(현행 3개월 → 12개월)

▶ 검토의견: 수용근란

- 근로기준법 제6조 및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제도적 차별은 불가
 -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UN인권협약, '79.1 적용),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ILO 제111호 협약, '99.12 적용)
-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범위를 조정하거나 감액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곤란
- 다만, 현재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숙식비용을 공제하고, 수습기간 연장(3~6월)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08.11.18. 김성조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 여부가 불투명
 - * 동 내용과 반대되는 입법안이 제출('08.12.3. 홍희덕의원 대표 발의) 되어 있고, 노동계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Q 고용노동부 내국인 채용환경 개선 및 저임금 목적 외국인력 사용 방지를 위해 최근 고용부담금(Levy) 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채용환경 개선 및 저임금 목적 외국인력 사용 방지를 위해 최근 고용부담금(Levy) 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사용 목적은 내국인을 구할 수 없거나 내국인의 잦은 이직 때문이며 저임금 목적은 비중이 크지 않음
 - ※ 외국인력 활용조사('10. 8./1,000개 기업) 결과 : 외국인력 활용 이유에 대해,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서'(76%), 저렴한 임금(21.2%) 등 중복응답 포함
- 특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및 숙식비 무료 지급 등으로 내국인에 비해 저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그건 이렇습니다

- ※ 외국인력 활용조사('10.8./1,000개 기업) 결과 : 내국인(170만5천원)과 외국인근로자(147만 7천원)의 임금이 약 23만원 차이가 있지만, 숙식비 무료제공 비율이 84.4%
 - 고용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은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를 최고 23.14%까지 임금에 포함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최저임금 미적용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의 90%가 내국인 피보험자수 50명 미만 소기업임을 감안, 고용허용인원의 세분화가 필요함
- ▶ 건의사항
-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 철회 요청
 - 외국인력 고용 수요가 많은 내국인피보험자수 50명 이하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허용 인원 기준 세분화
 - * 예) 10명 이하(고용허용인원 6명 이하) / 11명 ~ 30명(10명 이하) / 31명~50명(12명)

A 고용부담금제 도입 철회 및 사업장별 고용인원 세분화

- ▶ 건의내용
- 현재 검토중인 고용부담금제도 도입을 철회
 - 외국인력 고용 수요가 많은 50명 이하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허용 인원 기준을 세분화 하여 추가 고용 허용
 - * 현재 : 10명 이하 기업(고용허용인원 5명 이하)/11명~50명(10명 이하)
 - 변경(예시) : 10명 이하(고용허용인원 6명 이하)/11~30명(10명 이하)/31~50명(12명) 등
- ▶ 검토의견: 중장기 검토
- 고용부담금제는 인력부족을 겪는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한편, 국내인력의 일자리 보호를 조화하기 위한 제도로,
- 도입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도입 여부의 적절성 · 장단점 · 도입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나갈 예정
 - 50인 이하 기업의 외국인고용 허용 인원을 세분화하면서 허용인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 특정 소수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가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봄
- 특히 동 문제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바,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